#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71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김동아·허성무·민형배

김영배·박정현·이정문

이병진 · 김남근 · 전현희

노종면 · 김성환 · 전재수

정을호 · 임호선 · 오세희

송재봉 • 한정애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 입증과 피해액 산정하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를 당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부정 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 법률 제 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생 략) ~ (5) (현행과 같음) ⑥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신 설> 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 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7)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 다.

| <u>⑦</u> <u>제6항</u> 에 따른 배상액을 판 | ⑧ 제7항            |  |
|---------------------------------|------------------|--|
| 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                  |  |
|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